##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3396 제출연월일 : 2024. 8. 29.

부

제 출 자:정

### 제안이유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의 공유 체계를 정비하여 기관 간 칸막이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유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존의 데이터 등록 제도를 개편하여 공유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공유·관리 제도를 확립하는 한편,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역할을 데이터 공유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 지원,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지원 등으로 확대하는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을 보다 활성화하여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유데이터의 개념 규정(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공유데이터'를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다른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가공한 데이터로 정의함.

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활용(안 제4조의2 신설)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로서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학적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다. 공유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의 공유·관리 체계 마련(안 제8조부 터 제12조까지)
  - 1) 공공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 및 조례에서 비밀로 규정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공유데이터를 구축·관리하고,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 하도록 함.
  - 2)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된 공유데이터를 활용할 때에는 해당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 고, 해당 데이터가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 3) 공공기관의 장은 공유되지 아니한 데이터에 대해 해당 데이터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 고, 그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한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데이 터를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하여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

하도록 함.

라.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 확대(안 제13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공유데이터를 구축·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공유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지 아니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정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 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이행하 도록 함.

마.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기능 강화(안 제18조제1항)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기능에 공유데이터 연계에 관한 기술적 조치·관리, 공유데이터의 저장·관리 및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서 비스의 제공을 추가함.

바.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역할 확대(안 제21조제2항)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데이터 공유 활성화 촉 진을 위한 사업 추진 및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 한 업무 등을 추가함으로써 그 역할을 확대함.

### 법률 제 호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공유데이터"란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다른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가공한 데이터를 말한다.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공유, 제공 및 활용"으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소관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따른 중장기계획의 수립·시행 및 예산의 편성·집행이 데이터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데이터에"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에"로, "제공"을 "공유·제공"으로한다.

다만, 제3장의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공유 및 제공 등에 관하여 이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조의2(데이터의 가명처리)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로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 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학적 조사·연구
  - 2. 특화된 대책이나 맞춤형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한 특정 계층·지역·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 3. 안전사고, 질병 등의 사전 위험 요소와 원인 예측 및 해결방법에 관한 연구·개발
  - 4.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연구
- 제5조제3호 중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를 "제20조제2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제6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중 "연계·제공 및 공동활용"을 각각 "공유 ·제공 및 활용"으로 한다.
- 제7조제3항제5호 중 "연계"를 "공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공유데이터의 구축 및 품질·표준 등에 관한 계획 제3장의 제목 "데이터의 등록 및 제공 절차 등"을 "데이터의 공유 및

제공 등"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데이터의 공유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유데이터를 다른 공공 기관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데이터를 구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데이터가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 및 조례에서 비밀로 규정된 경우
  - 2.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데이터로서 이를 제공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다른 법령에 데이터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축·관리하는 공유데이터를 제 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이라 한다)에 연계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된 공유데이터를 가공·결합하여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저장하고 해당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된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저장하고 해당 데

- 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여러 기관이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여 관련 공공기관에 해당 데이터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하고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⑥ 정부는 공유데이터의 구축·관리 및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연계 등 데이터의 공유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⑦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데이터의 구축 •관리를 위한 절차 및 공유데이터의 연계·가공·결합·저장·관 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의 제목 "(등록된 데이터 등의 수집·활용)"을 "(공유데이터의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등록된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을 통하여 수집·활용할"을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된 공유데이터를 활용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데이터의 수집 방법 및"을 "공유데이터의"로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데이터를 활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공유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
- 2. 공유데이터가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 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

제10조제1항 중 "제8조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을 "제8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연계되지 아니한"으로, "데이터 소관"을 "해당데이터를 관리하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공 요청을 받은 데이터가 해당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인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의 제공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공한 데이터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데이터로 구축· 관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여 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데이터의 공유 및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

- 은 공공기관의 장이 제8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유데이터를 구축·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구축·관리하는 공유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 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공·연계 및 공동활용"을 "공유·제공 및 활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6호) 중 "제공·연계 및 공동활용"을 "공유·제공 및 활용"으로 한다.
  - 5.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유데이터의 연계에 관한 기술적 조치 및 관리
  - 6.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유데이터의 저장ㆍ관리

7.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제19조제2항제2호 중 "연계·제공·공동활용"을 "공유·제공·활용"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중 "필요하다고 전략위원회가 인정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1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제7호 및 제9호로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등록"을 "공유"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 5. 제8조제7항에 따른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지원
- 8.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지원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2조(데이터기반행정 운영실태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공 공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공유·제공 및 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운영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전략위원회와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전략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

- 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데이터기반행정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공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실태 평가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제26조 및 제27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장 보칙

- 제26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공공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은 제3장 및 제20조제3항의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제공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제27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있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데이터 제공 요청에 따라 제공한 데이터의 공유데이터 구축·관리 및 연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같은 항 전단에 따라 제공하는 데이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제공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된 데이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된 데이터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된 공유데이터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1의2. "공유데이터"란 공공기관
	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
	하고 있는 데이터를 다른 공
	공기관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
	• 가공한 데이터를 말한다.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생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u>령 또는 조례·규칙의 제정·개</u>
	정, 소관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
	에 따른 중장기계획의 수립ㆍ시
	행 및 예산의 편성ㆍ집행이 데
	이터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u>노력하여야 한다.</u>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u>④</u>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u>제공</u> ,	<u>⑤</u> <u>공유,</u>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제공 및 활용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단서 신설>

②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의 수집ㆍ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하여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신 설>

_	_	_	$\overline{}$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 다만, 제3장의 공

공기관 간 데이터의 공유 및 제 공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 을 우선 적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에 -----공유 •제공 -----
- 제4조의2(데이터의 가명처리) 공 공기관의 장이 데이터기반행정 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 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 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1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정 치적・경제적・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의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의 심의·조정)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한다.

- 1. 2. (생략)
- 3. <u>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4호</u> 3. <u>제20조제2항제4호</u>-----에 따른 데이터 분석등이 필 ------요한 사항 -----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학적
조사 • 연구		

- 2. 특화된 대책이나 맞춤형 서

   비스를 마련하기 위한 특정

   계층・지역・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 3. 안전사고, 질병 등의 사전 위 험 요소와 원인 예측 및 해결 방법에 관한 연구·개발
- 4.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연구

세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
책의 심의·조정)
1.•2.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 본계획) ① · ② (생 략)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3. (생략)
  - 동활용에 필요한 체계 구축
  - 5. 데이터의 연계·제공 및 공 동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 성
  - 6. 7. (생략)
  - ④·⑤ (생 략)
-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 행계획) ①・② (생 략)
  -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4. (생 략)
  - 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 터 연계 · 협력 방안 <신 설>
  - 6. (생략)
  - ④ (생 략)

4. 7	세22조제:	2항에	따른	운영실
태	평가에	관한	사항	

본계획) ① · ② (현행과 같음)

- 1. ~ 3. (현행과 같음)
- 4. 데이터의 연계ㆍ제공 및 공 4. ---- 공유ㆍ제공 및 활용
  - 5. ---- 공유·제공 및 활용
  - 6. · 7. (현행과 같음)
  - ④·⑤ (현행과 같음)

행계획) ① • ② (현행과 같음)

- 1. ~ 4. (현행과 같음)
- -- 공유----
- 6. 공유데이터의 구축 및 품질 • 표준 등에 관한 계획
- 7. (현행 제6호와 같음)
- ④ (현행과 같음)

# 제3장 <u>데이터의 등록 및 제공</u> 절차 등

- 제8조(데이터의 등록 등) ① 공공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분야 와 관련하여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 는 제외한다)를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라 한다)에 등록할 수 있다.
  -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경 제적·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 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 요가 있는 분야
  - 2. 특정 계층・지역・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

     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제거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
  - 4.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및

제3장 데이터의 공유 및 제공 등

- 제8조(데이터의 공유 등) ① 공공 기관의 장은 공유데이터를 다른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공유데이터를 구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데이터가 다른 법률 또는 다 른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 및 조례에서 비밀로 규정된 경우
  - 2.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데이터로서 이를 제공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
  - 3. 다른 법령에 데이터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축·관리하는 공유데이터를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 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 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필요가 있는 분야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의 원활한 공동활용을 위하여 인터 넷을 통하여 공개된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 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여러 기관이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여 관련 공공기관에 해당 데이터의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① 제3항에 따른 데이터 조사 기준과 절차·방법 및 데이터의 등록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리 플랫폼(이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라 한다)에 연계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된 공유데이터를 가공·결합하여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저장하고 해당 데이터를 관리할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된 데이터를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저장하고 해 당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여러 기관이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여 관련 공공기관에 해당 데이터를 제1항 및 제2한에 따라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하고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⑥ 정부는 공유데이터의 구축· 관리 및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연계 등 데이터의 공유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제9조(등록된 데이터 등의 수집· 활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 조에 따라 등록된 데이터를 데 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하여 수집·활용할 수 있다. <신 설>

-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⑦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 공 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다.
-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데이터의 구축·관리를 위한 절차 및 공유데이터의 연계·가공·결합·저장·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u>(공유데이터의 활용)</u> ① ---

-----

- ----- 데이터통합관리 플랫 폼에 연계된 공유데이터를 활용 할 -----.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데이터를 활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공유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 공하지 아니할 것
- 2. 공유데이터가 위조·변조· 훼손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 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 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의 수집 방법 및 활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제10조(데이터의 제공 요청)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받으려는 경우에는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다.

### ②·③ (생 략)

- 제11조(데이터의 제공 범위) ① 제11조(데이터의 제공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 에 따라 제공 요청을 받은 데이 터가 해당 공공기관이 생성하거 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인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데이터가 다른 법률 또는 다 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 통령령 및 조례만 해당한다) 에서 비밀로 규정된 경우 2.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 · 통

취할	것
----	---

- ③ ----- 공유데이터의
- 제10조(데이터의 제공 요청) ① ----- 제8조제2항 및 등록되지 아니한 데이터를 제공 |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연계 되지 아니한 ---- 해당 데이터 를 관리하는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공공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 에 따라 제공 요청을 받은 데이 터가 해당 공공기관이 생성하거 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인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 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제 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데이 터로서 이를 제공할 경우 국 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 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다른 법령에 따라 데이터의

   목적 외 이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 관의 장은 <u>제1항</u> 각 호에 해당 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 한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 제12조(데이터의 제공 결정 등) 제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데이터가 <u>제11조제1항</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한 후 제공 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②
<u>제8조제1항</u>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의 제공 범위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12조(데이터의 제공 결정 등)
①
<u>제</u> 8조제1항 -
②

없이 그 데이터를 요청한 공공 기관의 장에게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고, 데이터 제공 거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데이터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 에게 거부 결정의 내용과 사유 를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 설>

#### ③ • ④ (생 략)

제13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 제13조(데이터의 공유 및 제공 거 한 조정) ① 제12조제2항에 따 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 결정 통 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제 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 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u>이 경우 제</u>
공한 데이터는 제8조제1항에 따
라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하
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데이
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여
<u>야 한다.</u>

#### (3) • (4) (현행과 같음)

부에 대한 조정) ①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제8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제2 항 후단에 따라 공유데이터를 구죽・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구 축 · 관리하는 공유데이터를 데 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데 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제29조에 따른 공 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 | 정을 요청할 수 있다. 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 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데 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 5.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수 5.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유데이 집 · 관리되는 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활용

<신 설>

<신 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2조제2 항 전단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 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 청할 수 있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분쟁조정위 원회의 조정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 제공 및 활용-----
- 1. ~ 4. (현행과 같음)
- 터의 연계에 관한 기술적 조 치 및 관리
- 6.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유데이터의 저장 • 관리
- 7.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서비

<u>6</u> . ユ	밖에	데이터의	제공 :	· 연
계 5	및 공등	동활용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			

### ②·③ (생 략)

제19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7

- ① (생략)
-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해 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생략)
-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
   의 연계·제공·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 3. 4. (생략)
- 제20조(데이터분석센터) ① (생 <sup>7</sup> 략)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데이터의 분석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이하 "통합분석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수 있다.
  - 1. 여러 기관과 관련된 주요 현

스의 제공
<u>8</u> 공유·제
- 공 및 활용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2
<u>공유·제공·활용</u>
O 4 (취기가 가수)
3. • 4. (현행과 같음)
제20조(데이터분석센터) ① (현행
과 같음)
2
1

안의 해결 및 국정과제의 추 진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분석등이 <u>필요하다고</u> 전략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 2. ~ 4. (생략)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공공기관에 소관 데이터(제1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 ⑧ (생 략)

제21조(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저

- ① (생 략)
-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 3. (생략)

<신 설>

<신 설>

4.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

<u>필요한</u>
2. ~ 4. (현행과 같음) ③
<u>제8조제1항</u>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21조(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         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지원
<ul><li>5. 제8조제7항에 따른 데이터</li><li>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li><li>진 지원</li></ul>
<u>6</u>

정에 따른 데이터 <u>등록</u>·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지원 5. (생략) <신 설>

6. (생략)

③ ~ ⑥ (생 략)

제22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제22조(데이터기반행정 운영실태 및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 이터 연계·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전 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 개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그 성과가 우수 한 공공기관이나 부서, 공무원 · 직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표창하고 포상금 을 지급할 수 있다.

----- 공유----

- 7. (현행 제5호와 같음)
- 8.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 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지원
- 9. (현행 제6호와 같음)
- ③ ~ ⑥ (현행과 같음)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공 유ㆍ제공 및 활용 성과 등 데이 터기반행정 운영실태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전략위원회와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 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표 하여야 하며, 전략위원회가 개 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공공

기관이나 데이터기반행정에 이 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공기 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선 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실태 평가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장 보칙

<신 설>

제26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공 공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은 제3장 및 제20조제3항의 공공기 관 간 데이터 공유 · 제공에 따 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 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신 설>

제27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 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 탁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의 결과

○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을 강화하여 정부 내데이터 칸막이 현상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이가능해질 것으로, 5년간 총 19,573백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단위: 백만원)

							( - 1	1 1 1 1 1 1 1 1 1
구 :	연 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연평균
	○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5,850	5,829	_	_	_	11,679	2,335
지출	○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운영유지	-	1,222	2,224	2,224	2,224	7,894	1,578
	소 계(A)	5,850	7,051	2,224	2,224	2,224	19,573	3,914
	0	Δ						
수입	0	$\triangle$						
	소 계(B)	$\triangle$						
총비	용(A-B)	5,850	7,051	2,224	2,224	2,224	19,573	3,914

##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8조(데이터의 공유 등)	<ul> <li>○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위해 수행할 업무를 의무화함</li> <li>- 공유데이터를 구축·관리하여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고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li> <li>○ 정부는 데이터의 공유기반 마련을 위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li> </ul>
2	제9조(공유데 이터의 활용) 제2항제2호	○ 공공기관이 공유데이터 활용시 공유데이터가 위조·변조· 훼손·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3	제18조제1항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공유·제공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데이터의 연계에 관한 기술적 조치, 공유데이터의 저장·관리, 데이터 분석 서비스의 제공 등 필요한 사 항을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추가함
4	제21조(데이터 기반행정 전문 기관) 제2항 제27조(업무의위탁	<ul> <li>○ 전문기관의 수행 업무를 추가함</li> <li>-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li> <li>-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지원</li> <li>-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지원</li> <li>○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li> </ul>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 내역

# 1. 재정 수반 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제8조(데이터의 공유 등)	부	○ 공공기관의 공유데이터 구축·관리 및 연계는 기관의 공유데이터의 속성, 규모 등에 따라 시스템 구축·관리 및 연계 등의 범위가 정해지면 기관별 예산에 반영하여 별도 추진이 필요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에서 제외
2	제9조(공유데이터의 활용) 제2항	부	○ 현행 대통령령 제10조(등록된 데이터의 수집 방법 및 활용 절차 등) 제3항제3호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에 해당하여 비용추 계 작성 대상에서 제외
3	제18조 제1항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여	
4	제21조(데이터기반 행정 전문기관) 제2항 제27조(업무의 위택)	부	○ 현행 전문기관 출연사업인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내 세부 업무를 명문화하여 기존제도를 보완하는 것(추가재정소요 없음) 으로 비용추계 작성 대상에서 제외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O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을 강화하여 정부 내데이터 칸막이 현상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 지원

####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11,679백 = 10,285백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등) + ② 1,394백(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SW 구매비용)
-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운영유지, '25년) 1,222백 = 응용SW 유지관리 667백 + 상 용 SW 유지관리 30백 + 운영관리비 525백
-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운영유지, '26년~'28년) 6,672백(2,224백×3년) = (응용SW 유지관리 1,358백+ 상용 SW 유지관리 167백 + 운영관리비 699백)×3년

### IV. 부대의견

O 별도 없음

#### Ⅳ. 작성자

#### O 성명

주무관	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김효종	채희선	전한성	김준희

####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종	044-205-2468	khjong13@korea.kr

[별지 제3호서식]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

### I.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책무가 있으며 예산 편 성하여 조달(데이터기반행정법 제3조, 제18조)

####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u> </u>
연 도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 조세수입·세외수입 또는 국채발행·차입	5,850	7,051	2,224	2,224	2,224	19,573
○ 회계·기금 간 전입						
○기존 예산·기금의 항목 간 조정						
○기타						
〈합 계〉	5,850	7,051	2,224	2,224	2,224	19,573

### Ⅱ.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 중앙정부 일반회계 예산 편성하여 조달(데이터기반행정법 제3조, 제18조 및 시행령 제17조)

####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워)

연 도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 중앙정부	5,850	7,051	2,224	2,224	2,224	19,573
ㅇ 일반회계	5,850	7,051	2,224	2,224	2,224	19,573
○ ○○특별회계	-	-	-	-	-	-
○ ○○기금	-	-	-	-	-	-
□ 지방자치단체	-	-	-	-	-	-
ㅇ 일반회계	-	-	-	-	-	-
○ ○○특별회계	-	-	-	-	-	-
○ ○○기금	-	-	-	-	-	-
□ 기타	-	-	-	-	-	-
Ó	-	-	-	-	-	-
〈합 계〉	5,850	7,051	2,224	2,224	2,224	19,573

### Ⅲ.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1.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예산) 범정부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 구축·운영 예산 편성(사업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 (중기사업계획서) 공공기관 간 데이터를 막힘없이 흐르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책·의사 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추진** 및 기관 주도의 공유데이터 기반 확산 지원

#### 2. 지방자치단체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O 해당사항 없음

#### 3. 기타 재원조달 방안

O 해당사항 없음

#### IV. 부대의견

O 해당사항 없음

### V. 협의사항

협의시점	혐의기관	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24.1월~2월	기획재정부	중기사업계획에 반영

#### Ⅵ. 작성자

#### ○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김효종	채희선	전한성	김준희

####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종	044-205-2468	khjong13@korea.kr

<sup>\*</sup>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